

삼척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의 안 | |
| 번 호 | 211 |

제출일자 : 1995. 9. 21.

제출자 : 삼 척 시 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5. 5. 16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사항등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함(안 제4조)
-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신설함(안 제36조의2)
 -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등)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때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
 - . 다른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될 재산이 확정된때와 변동이 있을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읍, 면지역에서는 400제곱미터에서 700제곱미터로 확대(안 제38조 제1호)
-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38조의 2)
- 관사운영비중 예산에서 부담할 수 있는 범위를 조정함(안 제55조)
 - . 보이라운영비, 응접셋트, 카덴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전화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1급관사에 한함 → 1,2급관사에 한함)

3. 참고사항

- 삼척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신,구조문대비표 1부.

삼척시조례 제 호

삼척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36조 제1항중 "시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를 "시장이 다음년도 예산편성전까지"로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를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 하여야"로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를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로 하고 동
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①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
하지 아니하고 다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등)으로 취득(보상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때에는 그 소관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
의 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된 재산이 확정된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 제1호중 "(읍면지역에서는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읍면지역에서는 700
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공유재산매각 승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 사무를 위임 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일어야 한다.

제55조중 제3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 다음에 제6호 내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이라운영비(단, 1급, 2급관사에 한함)
4. 응접셋트, 카텐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단, 1급, 2급관사에 한함)
5. 전화요금(단, 1급, 2급관사에 한함)
6. 전기요금(단, 1급, 2급관사에 한함)
7. 수도요금(단, 1급, 2급관사에 한함)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단, 1급, 2급관사에 한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 조 문 대 비 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4조(중요재산) ①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중요재산이라함 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7조에 규정된 공유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p> <p>1. 1건당 예정가격 2억5천만원 이상 2.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천제곱미 터 이상</p> <p>②토지의 경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면적 이하일지라도 제1호에 규정된 금 액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중요재산으 로 본다.</p> <p>③중요재산 한계기준으로서 1건이라함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p> <p>1. 동일한 취득처분 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할 경우 2.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 일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 득처분하는 경우 4. 당해재산에 인접 또는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 5. 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 라도 당초에 동일목적으로 운영</p> |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

| 현 행 | 개 정 안 |
|---|--|
| 관리하고 있는 경우 | |
| 6. 기타 사회통념상 또는 당해재산의 구체적인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제36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전년도 12월 31일 까지 삼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36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 시장이 다음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 -----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 -----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전 까지 ----- -----. |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받은 폐천부지취득과 동 재산을 양여목적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 <삭 제> |
|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재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과 가격을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일괄하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삭 제> |

| 현 행 | 기 정 안 |
|---|--|
| <p>④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p> <p><u><단서신설></u></p> | <p>④-----</p> <p>-----.</p> <p>다만, 공유립에 대하여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 하여야 한다.</p> |
| <p><u><신 설></u></p> | <p>제36조의 2(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①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③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p> |
| <p>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95조 제2항 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 <p>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p> <p>-----.</p> <p>-----.</p> |

| 현 행 | 개 정 안 |
|--|--|
| <p>(단, 1급관사에 한함)</p> <p>5. 전화요금(단, 1급관사에 한함)</p> | <p>(단, 1급.2급관사에 한함)</p> <p>5. 전화요금(단, 1급.2급관사에 한함)</p> |
| <p><신설></p> | <p>6. 전기요금(단, 1급.2급관사에 한함)</p> <p>7. 수도요금(단, 1급.2급관사에 한함)</p> <p>8. 아파트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p> <p>(단, 1급.2급관사에 한함)</p> |